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69
----------	-------

제출년월일 : 2013. 8.2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사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정부의 변화된 행정환경과 우리구 구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우리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 명칭을 변경(안 제3조 및 제4조)

-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 변경

나.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안 제4조)

-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7.25. ~ 2013. 8. 6.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3. 8.13.)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의6호 중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을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임사무에서 주관국란의 “행정관리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관리국</u>, <u>기획재정국</u>, <u>주민생활국</u>, <u>도시환경국</u>, <u>건설교통국</u>을 둔다.</p> <p>② (생략)</p> <p>제4조(<u>행정관리국</u>) ① <u>행정관리국</u>에 총무과·공보과·자치행정과·문화관광과·생활체육과·민원여권과를 둔다.</p> <p>② <u>행정관리국장</u>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6의5. (생략)</p> <p>36의6. <u>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u> 등에 관한 사항</p> <p>37. ~ 39. (생략)</p>	<p>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 ----- <u>안전행정국</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u>안전행정국</u>) ① <u>안전행정국</u> ----- ----- -----.</p> <p>② <u>안전행정국장</u>----- -----.</p> <p>1. ~ 36의5. (현행과 같음)</p> <p>36의6. <u>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u> -----</p> <p>37. ~ 39. (현행과 같음)</p>